

의안번호	2214336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5.11.27.
추 계 번호	25D6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정을 하고 수소법원의 요청에 따라 그 조정의 등본·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866만 9,000원, 2031년 8,252만 1,000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9,177만원(연평균 7,835만 4,000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직권조정 인건비(안 제23조)	77,381	72,757	75,372	78,081	80,888	384,479	-
등본·사본 송부비용(안 제23조의2)	1,288	1,380	1,449	1,541	1,633	7,291	-
합계	78,669	74,137	76,821	79,622	82,521	391,770	78,354

주: 본 추계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사례와 등·사본의 송달비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 (조정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함.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협의회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피해가 크고 사실과 증거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4항) 협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음(제8항)	의무규정
2	안 제23조의2 (소송과의 관계)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회에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 기록 및 제23조제8항에 따른 조정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조정 등)	○	—
2	안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직권조정 인력의 인건비(안 제23조제8항)와 조정 등본·사본 송부 비용(안 제23조의2제4항)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직권조정 필요 인력은 직권조정 추정건수를 최근 5년 조정인력 1인당 가맹사건 처리건수로 나누어 추정함
 - 최근 5년 가맹사건 분쟁조정 처리건수 증가율(6.02%)와 분쟁조정 거부율(8.02%)은 다음과 같음

[표 2] 가맹사업 분쟁조정 거부율: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평균
가맹사건 처리건수(A)	486	513	575	587	619	2,780	556
불성립 건수	62	54	62	96	88	362	72
조정거부건수(B)	33	28	38	74	50	223	45
조정거부율(C=B/A)	6.79%	5.46%	6.61%	12.61%	8.08%	8.02%	8.02%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사건 처리건수 증가율과 분쟁조정 거부율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기간 가맹사업 분쟁 직권조정 건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가맹사업 분쟁 직권조정 건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건)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가맹사건 처리건수(A)	699	772	788	837	890
조정거부율(B)	8.02%	8.02%	8.02%	8.02%	8.02%
조정거부건수(C=A×B)	56	60	63	67	7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최근 5년 가맹사업 조정인력 1인당 분쟁조정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4] 가맹사업 조정인력 1인당 분쟁조정 건수: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평균
가맹사건 처리건수(A)	499	483	513	575	587	2657	531
조정 인력(B)	6	6	6	6	6	30	6
1인당 처리건수(C=A/B)	83	81	86	96	98	444	8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직권조정 추정 건수(평균 71건)를 조정인력 1인당 분쟁조정 건수(평균 89건)로 나누어 직권조정에 필요한 인력을 추정하면 1명(0.8명=71건/89건)임
- 본 추계에서 직권조정 인력의 인건비는 2025년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다만, 퇴직금적립금은 연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적용함
- 본 추계에서 직권조정 등본·사본 송부 비용은 직권조정 추정 건수에 최근 5년 등·사본 송달 우편요금(등기) 단가(23,000원)²⁾를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3	3.3	3.3	3.3	3.3
기관부담 요율(%)	11.749	12.064	12.405	12.749	13.095
1인당 자산취득비(공공기관 천원)	7,129	7,271	7,417	7,565	7,7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등·사본 송달 우편요금 단가

(단위: 천원,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공공요금	81,496	64,100	63,200	70,300	110,420	—
송달건수	2,936	2,868	3,151	3,740	4,330	—
송달 공공요금 단가	28	22	20	19	26	23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직권조정 인력의 인건비(안 제23조제8항)

- 개정안에 따른 직권조정에 필요한 인력(1명)의 인건비는 보수, 기관부담금, 퇴직금적립금,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정을 하는 경우, 직권조정 인력의 인건비는 2027년 7,738만 1,000원, 2031년 8,088만 8,000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억 8,447만 9,000원으로 추계됨

[표 5] 직권조정 인력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 건 비	연간 보수액(A)	58,501	60,431	62,426	64,486	66,614	—
	기관부담금(B=A×요율)	6,873	7,290	7,744	8,221	8,723	—
	퇴직금적립금(C=A/12)	4,875	5,036	5,202	5,374	5,551	—
	소계(D=A+B+C)	70,249	72,757	75,372	78,081	80,888	—
자산취득비(E)		7,132	—	—	—	—	—
합계(F=D+E)		77,381	72,757	75,372	78,081	80,888	384,4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직권조정 등본·사본 송부 비용(안 제23조의2제4항)

- 개정안에 따른 직권조정 등본·사본 송부 비용은 직권조정 추정 건수에 송달 비용 단가(23,000원)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권조정의 등본·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729만 1,000원으로 추계됨

[표 6] 직권조정 등본·사본 송부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직권조정 추정 건수(A)	56	60	63	67	71	—
송달비용 단가(B)	23	23	23	23	23	—
합계(C=A×B)	1,288	1,380	1,449	1,541	1,633	7,2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정을 하고 수소법원의 요청에 따라 그 조정의 등본·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866만 9,000원, 2031년 8,252만 1,000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9,177만원(연평균 7,835만 4,000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직권조정 인건비(안 제23조)	77,381	72,757	75,372	78,081	80,888	384,479	-
등본·사본 송부비용(안 제23조의2)	1,288	1,380	1,449	1,541	1,633	7,291	-
합계	78,669	74,137	76,821	79,622	82,521	391,770	78,354

주: 본 추계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사례와 등·사본의 송달비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사례와 등·사본의 송달비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61	jsy@na.go.kr